

상공자원분야 규제완화 추진계획

– 상공자원부 –

1. 추진경위

- 상공자원부는 지난 5월 6일 총 112건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상공자원분야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 상공자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상공자원부 소관 행정규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주무부서로서 모범을 보이고 다른 분야의 기업활동규제에 대하여도 완화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취지하에, 지난해 10월 동위원회 사무국에서 상공자원부 소관 규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한 이래 업계·연구소·관련단체 등의 의견 수렴, 상공자원부내 내부협의 및 기업활동규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12건의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완화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는 총 183건의 검토대상 행정규제 중 61.2%를 개선하기로 확정한 것이며 현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외에는 대부분 개선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 한다.

○ 이번에 확정된 규제완화계획은 업계의 단편적 건의 사항의 해결 위주로 행해온 현재까지의 규제완화작업과는 달리 정부가 스스로 검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검토방법에 있어서도 규제목적의 정당성, 규제방법의 타당성 및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제로베이스(Zero Base)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향후 체계적인 규제완화추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고 볼 수 있다.

2. 조치 일정

- 이번 계획에 포함된 개선과제들 중 법령개정이 필요 한 사항만도 44건에 이르는 등 시행에 상당한 시일 이 소요되는 것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말까지 개선 대상 과제의 87%에 이르는 97건이 조 치 완료될 예정이어서 상공자원부의 강력한 규제완 화의지를 느끼게 한다.

법령별 분류

(참고 1)

(단위 : 건)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고시	기타	합 계
44	22	19	27		112

시행시기별 분류

(참고 2)

(단위 : 건)

기 조 치	94 상반기	94 하반기	95 이 후	합 계
17	28	52	15	112

- 한편, 상공자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확정된 규제완화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 해 개선과제에 관련된 법령개정 추진상황, 현장에 서의 이행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규제완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조속한 법령개정 이 곤란할 경우 이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 별조치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등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추진계획은 기업활 동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조치들을 담고 있지 만, 그 중에서도 정유산업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획 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들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 관한 규제완화 조치들은 크게 진입규제, 영업활동규제, 검사 및 고용의무관련 규 제등으로 나뉘어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3. 주요 조치내용

가. 진입규제완화

- 석유정제업 및 석유정제시설 허가제도를 유기자유화 예고 시점에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경제 5개년 계획등에 나타난 시점보다 상당기간 앞당겨진 시점에 정유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실현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금년중에 석유정제시설 설치 허가시 요구되던 저장시설 보유의무가 현행 60일분에서 45일분으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정유업체의 신·증설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며,
- 석유류 유통 분야에서도 현재 주유소등에 국한된 석 유이동판매소의 허가대상이 일반판매소로 확대되고, 윤활유판매업과 아스팔트 수출입업 신고제도가 폐지되며, 수도권 지역의 석유대리점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등 유통부문에 대한 진입규제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석유류 유통시장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제도가 금명간 폐지 됨에 따라 그간 해외자원개발업체들이 겪었던 기간 지연으로 인한 계약조건 악화등 부작용이 해소되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전력분야에서도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되던 발전사 업자의 일반에 대한 전력판매가 일정범위내에서 허용되어, 전력시장에 부분적으로 나마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전기공사업 면허발급이 정례화 되어 면허 제도에 따른 진입제한등의 부작용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나. 영업활동 규제완화

- 석유제품과 나프타 수출입 및 중·단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에 대한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국제시장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등유의 색상 제한, LPG탱크로리 폭발방지 장치 설치의무 등 실효성이 적던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 관련업계의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전력분야에서도 전기공사업체의 수급한도액 산정시 공사실적과 자본금 중 선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 공사업의 대형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이 생산설비의 신·증설로 특고압 전력을 공급받을 때 납부하는 용량공사비의 분할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중소제조업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검사 및 고용의무 완화

- 보일러 등 열사용 기자재의 형식승인 대상품목이 현행 25개에서 15개로 대폭 축소되고, '97년 경에는 형식승인제도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설비가동을 중단 시킨 후 실시되던 고압가스설비등의 기밀시험을 운전중 누설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고압가스용 기등의 수리검사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중화학등 관련업체들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이외에도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가 폐지되고, 송유관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채용·해임 및 퇴직신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행정편의적 규제가 대부분 없어질 전망이다.

라. 평가

○ 에너지분야는 그간 관련산업에의 과급효과와 높은 국민경제적 비중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던 분야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확정·발표된 에너지분야 규제완화 추진계획은 진입규제, 영업활동규제, 검사 및 고용의무 관련 규제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획기적인 조치들로서, 정부의 강한 규제완화의지를 느끼게 하며, 이로써 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이 지금까지의 직접규제 방식에서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였음을 알게 한다.◆

주요 개선과제 내역

1. 진입규제완화

행정규제명	현 행	개 선 내용	추진일정	관련법규
○ 해외자원개발계획 신고 및 해외자원개발사업허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자원개발을 하고자 하는자는 허가 신청전에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제를 폐지하고 단순신고제로 전환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지원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 마련 	'95. 상반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허가제도

-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업을 양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상공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사업을 휴, 폐지 및 재개하는 경우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94. 2. 4일부로 허가대상 품목을 축소했으며(40개 품목→32개 품목)

- 금년 중에 허가제도를 등록제로, 양도인가는 신고제로 전환하며, 휴지신고는 폐지
 - '95년 중에 등록대상 품목을 대폭 축소(32개 품목→14개 품목)

○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제도

-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 등록대상을 현행 21개 품목에서 8개 품목으로 축소

○ 석유정제업 허가제도	○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현시점에서는 허가제도를 폐지 할 경우 과잉설비투자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우려되므로 - 유가자유화 예고시점에서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	유가자유화 예고시 관련 법령 개정	석유사업법
○ 석유정제시설 설치허가제도	○ 석유정제업자가 정제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현시점에서 허가제도를 전면 폐지하면 과잉설비투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유가자유화 예고시점에서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되어 - 저장시설 건설의무는 현행 60일에서 45일로 완화	유가자유화 예고시 관련 법령 개정	석유사업법시행령
○ 간이석유정제설비 설치허가제도	○ 석유정제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석유정제업 신규진입 허용 일정에 맞추어 완화 추진	유가자유화 예고시 관계 법령 개정	석유사업법
○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허가	○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석유이동판매소를 할 수 있는 자를 주유소 허가를 받고자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판매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 유가자유화 추진일정에 맞추어 허가제도 폐지 ○ 석유이동판매소 영업허용대상을 주유소에서 일반판매소로 확대	유가자유화 관련 법령 개정시 반영 '94. 상반기	석유사업법
○ 윤활유 판매업 신고 제도	○ 윤활유, 항고유, 아스팔트등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윤활유 판매업에 대한 신고제도를 폐지	'94년중	상공자원부 고시 (가칭 "석유이동판매소 설치·운영"에 관한고시)
○ 석유판매업(대리점) 허가 제도	○ 석유판매업(대리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기준 : 저장시설) - 서울, 경기, 인천 : 1,500KL이상 - 기타 지역 : 700KL이상	○ 허가기준 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저장시설기준을 현행 1,500KL에서 1,000KL로 완화	'94년중	석유사업법시행령
○ 석유수출입 신고제도	○ 무역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석유를 수출입하려는 자는 전년도 수입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수입량에 대한 저장능력 확보를 위해 신고제도를 존치하되 - 저장시설 보유기준을 현행 60일에서 45일로 완화	'94년중	석유사업법시행령
○ 송유관사업의 휴, 폐지 허가 및 법인의 해산인가	○ 송유관 사업자는 송유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송유관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등은 상공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사업의 휴·폐지 허가제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 법인의 해산인가제는 폐지	법률개정시 반영	송유관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집단급 사업허가	○ 액화석유가스 집단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집단급 사업허가 대상범위를 완화하여 - 수용가구가 15 이하이고, 용기 저장량 250kg 미만인 시설	'94년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 아스팔트 수출입 신고제도	○ 아스팔트를 수출입 하려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아스팔트 수출입 신고제도 폐지	'94. 상반기	석유사업법시행령
○ 민간발전기업의 전기판매 제한	○ 발전사업자는 그가 발전한 전기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는 공급 할 수 없음. - 다만, 발전설비 설치장소와 동 일구내에 있는 겸업설비 또는 사원용 주택에 대해 공급지점마다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부담경감과 경쟁촉진을 위해 - 발전사업자의 겸업설비에 대한 공급가능지역 확대추진	'94년중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 면허 제도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1회씩 발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94년중	전기공사업법
○ 석탄가공업 허가제도	○ 석탄가공업 중 연탄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연탄제조업에 대한 저탄장 면적, 동력운전기 설치대수, 자본금 등의 허가 기준을 완화	'94. 하반기	석탄산업법시행령

2. 영업활동 규제완화

행정규제명	현 행	개 선내용	추진일정	관련법규
○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수출입 승인 제도	○ 나프타, 중질 NCL 등 석유화학 원료의 수·출입 계약 또는 수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나프타에 대해서는 수·출입 승인 제도 폐지	'94년중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 석유(제품) 수출·입 승인 제도	○ 석유의 수입계약, 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석유제품의 수출입 승인제도 폐지	'94년중	석유사업법
○ 석유제품(등유) 색상 제한	○ 등유의 정제도, 변질여부, 타물질 함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검사 항목에 등유의 색세이볼트를 포함시키고 있고, - 현재 이를 +18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 등유의 색세이볼트 기준을 현행 +18에서 +16이상으로 완화	'94년중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 액화 천연가스 도입 및 수송계약 승인	○ 석유(LNG 포함)의 수입계약, 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중·단기 LNG 도입계약 및 LNG 수송계약에 대한 승인제도 폐지	'94년중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획 승인제도	○ 300M 이상의 중압관, 500M 이상의 배관설치공사,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획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가스공급시설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현 승인대상중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계획은 신고 대상으로 완화	'94년중	도시가스사업법
○ LPC탱크로리 폭발방지 장치 설치 의무	○ 액화석유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폭발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함.	○ 200km이상 장거리 운반의 경우에만 폭발방지 장치 또는 일반 인을 동승시키도록 함.	'94 상반기중 ('94. 4. 8. 입법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액화석유가스 수입계약 승인 제도	- 다만,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액화석유가스의 저가안정도입을 위해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 일정기준 이하의 현물수입 계약을 신고제로 전환	'94년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 규칙
○ 표준공사비 산정 방법	○ '93. 1. 1부터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로 인한 고압 및 특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용량공사비를 추가 징수	○ 기업의 초기 설비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허용	'94. 상반기	한전영업 업무 처리지침 개정
○ 전기공사의 수급 한도 제한	○ 전기공사업자는 단일공사의 입찰금액이 수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전기공사를 수급할 수 없음.	○ 수급한도액 산정시 공사실적과 자본금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94. 상반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지정광구 양도허가 제도	○ 지정광구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허가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기존별 존속은 필요하나 석탄광은 지정광구 대상 광종에서 제외	'94. 상반기	광업법 시행령

3. 검사 및 고용의무관련 규제완화

행정규제명	현 행	개선내용	추진일정	관련법규
열사용 기자재 형식승인 제도	○ 열사용 기자재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에 관해 승인을 얻어야 함.	○ '94. 2. 4일부로 형식승인대상을 축소했으며(25계 품목→15개 품목) - '95년중에 태양열 집열기를 추가로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 - '97년에 형식승인제도 완전 폐지	'95: 시행규칙 '97: 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시행규칙
○ 수입석유제품의 품질검사제도	○ 윤활유, 자동차용 휘발유등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 수입, 인도하려는 경우 상공자원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생략하도록 함.	'94년중	통합공고
○ 송유관사업용 시설 안전관리자 채용, 해임 및 퇴직 신고	○ 송유관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채용, 해임, 퇴직한 경우 이를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안전관리자 채용, 해임, 퇴직 신고제도 폐지	법률개정시 반영	송유관사업법
○ 고압가스 설비 배관 기밀시험 검사제도	○ 고압가스설비 또는 배관은 상용 압력 이상으로 실시하는 기밀시험에 합격해야 함.	○ 공장의 가동등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기조치 ('94. 3. 9 개정)	가스관계 3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용기등의 수리검사	○ 고압가스용기등을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범위에 관계없이 수리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수리자가 자체검사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기조치 ('94. 3. 9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광산보안관리 직원 선임의무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보안관리 직원을 선임해야 함.	○ 기존법 규정의 존속은 필요하지만 보안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의무채용인원 축소	'94년 상반기	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